

서울교육대학교와 (주)전자신문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본 양해각서는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라 한다)와 주식회사 전자신문사(이하 '전자신문' 이라 한다)간 공동 협력을 위하여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성공적인 소프트웨어(SW) 사고력 올림피아드 개최를 위한 것으로 사업전반에 걸친 협력의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협력분야) 서울교대와 전자신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SW 사고력 올림피아드 기획 및 시행
2. 사업 홍보 및 이벤트 개최
3. 기타 각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업무

제3조(비밀엄수) 본 협약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엄수의무는 해제,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본 협약서가 실효된 이후에도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협정기간 및 변경) 본 양해각서의 협정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에도 본 양해각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법적효력) 본 양해각서는 제3조(비밀엄수), 제7조(기타)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6조(효력발생) 서울교대와 전자신문은 양해각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해각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7조(기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과정상 각 당사자가 담당할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7. 4. 24.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김경성

김 경 성



(주)전자신문사
대표이사 구원모

구 원 모